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목 차>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필요한 투자금액 요건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및 전환의 통지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변경 보고, 공시 및 그 시한
4.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이광윤
	담당부서 (과)	벤처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은청 벤처정책관		연락처	044)204-7706
	과장	이제홍 벤처정책과장 직무대리		이 메 일	jadu710@korea.kr

2023. 08. 1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이은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필요한 투자금액 요건								
	2.규제조문	제11조의14 제1항~제3항								
	3.위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 08. 21~2023. 10. 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정부개입 필요성) 신설 제도의 안착, 법적 안정성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개입 필요								
	7.규제내용	○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을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으로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td><td>연간 약 300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9.규제목표	○ 법률에서 위임한 제도 활용 요건을 설정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 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 령」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 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 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제도개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입배경)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국정과제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기업승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해외사례) 미국, 중국, 인도 등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

□ 정부개입 필요성

- 복수의결권은 상법의 특례로 도입된 신설 제도로써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투자금액 요건
	내용	○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을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으로 설정

- 규제대안의 비교 :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복수의결권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회계법인, 4~7월)
-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현장간담회(한무경의원·중기부, 6.8일)
-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벤처기업협회, 7.24~8.4일)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책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8.16일)

3. 규제목표

- 복수의결권 제도의 안착과 법적 안정성 확보, 오남용 방지를 통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을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복수의결권의 발행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
 - (특수관계인) 친인척 등 사실상 경제적 공통체인 특수관계인의 투자를 통해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투자금액) 법률상의 창업주 요건* 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

* 회사의 발기인, 등기이사, 30%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 등

- (타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규제의 타당성 확보

- (특수관계인)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설정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영향력을 갖는 법인·단체 및 그 임원

- (투자금액) 중기부에 보고된 벤처투자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을 산출

* 누적 투자금액 100억 원 & 마지막 투자금액 50억 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적용 대상이 벤처기업이므로 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개정안이 적용되는 피규제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임 • 신설 제도이며, 국내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성적 판단 필요
④ 대상 업종	벤처기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누적 투자금액 100억원,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 ② 개정내용의 특성 ○ 발행에 필요한 투자금액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받은 투자는 제외됨(법 제16조의11 제1항) -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 설정 ○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법 제16조의11 제2~3항) - 누적 투자금액 100억원 &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 설정

	③ 유사사례 분석 ○ (중국) 예상 시가총액 100억 위안 또는 예상 시가총액 50억 위안인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구조 허용 ○ (홍콩) 예상 시가총액 100억 홍콩달러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 10억 홍콩달러 또는 예상 시가총액 400억 홍콩달러 이상인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구조 허용 ○ (싱가포르) 예상 시가총액 3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또는 전년도 세전이익이 3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구조 허용 ④ 차등화 대상 검토 시 고려사항 ○ 개정내용의 특성상 벤처기업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차등을 설정하는 것도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주식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들의 선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유럽)**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허용
- **(중국)** 비상장은 '18.9월부터 발행이 허용되었으며, '19.3월부터 의결권 수 10개 제한으로 상장까지 허용
- **(인도)** 비상장은 '13년부터 발행이 허용되었으며, '19.6월부터 일정

제한(의결권 10개 제한, 최대 10년 존속) 하에 상장 허용

- (싱가포르) 기업 유치를 위해 '16년부터 비상장 기업에 대해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18.6월부터 의결권 수 10개 제한으로 상장까지 허용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행정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소요예산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복수의결권 발행 실적, 벤처투자시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되었으므로 규제 신설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및 전환의 통지								
	2.규제조문	제11조의15								
	3.위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 08. 21~2023. 10. 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정부개입 필요성) 신설 제도의 안착, 법적 안정성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개입 필요								
	7.규제내용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재산권자인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td><td>연간 약 300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9.규제목표	○ 복수의결권주식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u> ① <u>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u> ② <u>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u> 1. <u>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u>

현행	개정안
	<u>와 전환된 수량</u> <u>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u> <u>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u> <u>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u> <u>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u> <u>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u> <u>와 발행수량</u> <u>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u> <u>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u> <u>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u> <u>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u> <u>다는 뜻</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제도개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입배경)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국정과제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기업승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해외사례) 미국, 중국, 인도 등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

□ 정부개입 필요성

- 복수의결권은 상법의 특례로 도입된 신설 제도로써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및 전환의 통지
규제대안1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재산권자인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규제대안의 비교 :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복수의결권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회계법인, 4~7월)
-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현장간담회(한무경의원·중기부, 6.8일)
-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벤처기업협회, 7.24~8.4일)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책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8.16일)

3. 규제목표

- 복수의결권 제도의 안착과 법적 안정성 확보, 오남용 방지를 통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을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복수의결권주식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
 - (전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대기업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엄격히 적용
 - (통지) 복수의결권주식의 변동은 주주들의 재산권 변동을 초래하므로 그 사항을 주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타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규제의 타당성 확보
 - (전환)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성 확보
 - (통지) 주주의 재산권과 관련된 상법 규정(회사에 의무 부과)과 비교하였을 때, 신설 규제가 과도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적용 대상이 벤처기업이므로 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개정안이 적용되는 피규제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임 • 신설 제도이며, 오남용 방지 및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란 점에서 정성적 판단 필요
④ 대상 업종	벤처기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 ② 개정내용의 특성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법 제16조의12 제1항 제6호)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제외 사유를 준용 ○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함(법 제16조의12 제3항) - 2주 이내에 주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유사사례 분석 : 「상법」의 주주 재산권 관련 조항 ○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상법 제363조)는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환주식의 상환(상법 제345조)에 대해 그 주주에게 2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상법 제418조) 시 주주에게 그 내용을 2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 2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④ 차등화 대상 검토 시 고려사항 ○ 개정내용의 특성상 벤처기업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상법」의 주주 재산권 관련 조항

-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상법 제363조)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환주식의 상환(상법 제345조)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상법 제418조)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자본금 감소의 결의(상법 제438조)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행정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소요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복수의결권 발행 실적, 벤처투자시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되었으므로 규제 신설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변경 보고, 공시 및 그 시한								
	2.규제조문	제11조의16								
	3.위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 08. 21~2023. 10. 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정부개입 필요성) 신설 제도의 안착, 법적 안정성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개입 필요								
	7.규제내용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보고 내용 및 절차 규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공시 내용 규정 ○ 보고 및 공시의 시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td><td>연간 약 300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9.규제목표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현황을 보고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 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 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u> <u>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u> <u>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u> <u>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u> <u>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 경된 경우로 한정한다)</u> <u>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u> <u>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u> <u>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 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 항</u> <u>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u>

현행	개정안
	<u>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 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정관</u> <u>2. 주주총회 의사록</u> <u>3. 주주명부</u> <u>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제도개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입배경)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국정과제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기업승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해외사례) 미국, 중국, 인도 등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

□ 정부개입 필요성

- 복수의결권은 상법의 특례로 도입된 신설 제도로써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변경 보고, 공시 및 그 시한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보고 내용 및 절차 규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공시 내용 규정 ○ 보고 및 공시의 시한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복수의결권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회계법인, 4~7월)
-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현장간담회(한무경의원·중기부, 6.8일)
-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벤처기업협회, 7.24~8.4일)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책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8.16일)

3. 규제목표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
 - (보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주요내용(정관, 받은 자의 성명, 발행일자 및 수량 등)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중기부는 그 내용을 관보 고시
 - (공시) 주주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사항이 신속히 알려질 필요가 있어 시한 필요
- (타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규제의 타당성 확보
 - (보고)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보고서, 정관, 의사록 및 주주명부 총 4부)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시)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되, 전자적 방식과 거래소를 통한 공시도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부담 최소화
 - (시한) 보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

시한을 명확히 알릴 필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적용 대상이 벤처기업이므로 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개정안이 적용되는 피규제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임 • 신설 제도이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량화할 수 없어 정성평가 필요
④ 대상 업종	벤처기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② 개정내용의 특성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내용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중기부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의14 제1항) - 복수의결권주식의 관리 및 관보 고시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발행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함(법 제16조의14 제2항) - 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비치 및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부담 없음 ③ 유사사례 분석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철회 보고(법 제16조의6)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자본시장법 제147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자본시장법 제173조) ④ 차등화 대상 검토 시 고려사항 ○ 개정내용의 특성상 벤처기업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차등을 설정하는 것도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법 제16조의6 및 영 제11조5)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행정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소요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복수의결권 발행 실적, 벤처투자시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되었으므로 규제 신설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 절차								
	2.규제조문	제11조의17 제1항								
	3.위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 08. 21~2023. 10. 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정부개입 필요성) 신설 제도의 안착, 법적 안정성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개입 필요								
	7.규제내용	○ 중기부는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 가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td><td>연간 약 300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연간 약 300개사								
9.규제목표	○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 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제도개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입배경)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국정과제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31-2)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기업승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해외사례) 미국, 중국, 인도 등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

□ 정부개입 필요성

- 복수의결권은 상법의 특례로 도입된 신설 제도로써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 절차
	내용	○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규제대안의 비교 :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복수의결권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회계법인, 4~7월)
-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현장간담회(한무경의원·중기부, 6.8일)
-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벤처기업협회, 7.24~8.4일)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책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8.16일)

3. 규제목표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가 직권으로 조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의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
- (타당성) 직권조사 관련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 최소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행정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소요예산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복수의결권 발행 실적, 벤처투자시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되었으므로 규제 신설 타당